

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안이유

○ '99년 1월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체결 이후 5개 시·도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.

○ 이에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□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개요

○ 구 성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

○ 목 적 : 관광상품 공동 개발·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도모

○ 운 영 : 5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
○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균등분담) 및 전년도 이월금

□ 주요사업

-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
-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, 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
- 개발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 및 판촉활동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

□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

- 수도권의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꾸준한 홍보·마케팅이 필요하며
- 5개 시·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지위 유지가 요구됨

5. 검토의견

- 이번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은
 - 1999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 5개 시도가 모여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를 설립하였음.
 - 5개 시도가 매년 5천만원씩 부담하여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 -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보지 않아 규약안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음.
 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의 부담 근거

와 지속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(경비지출의 제한)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, 현재의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한 운영경비 부담은 법령위반에 해당함.
- 따라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변경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.
- 금번 규약안은 행정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1부. 끝.